

#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739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8. 9 . 9 .  
발 의 자 : 문인수 의원 외  
10인

## □ 제 안 이 유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, 합리적인 의정 활동 및 현장활동을 수행하고자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총일수를 연장하고자 함.

## □ 주 요 골 자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규정함.(안 제1조)
- 법 41조를 법 제47조로 하고, 연간 회의총일수를 100일 이내로 규정하되,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.(안 제2조)
- 「지방자치법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규정함.(안 제3조)
-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규정함.(안 제4조)
- 「지방자치법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규정함.(안 제5조)

개정 조례안 : 별첨

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 발췌서 : 별첨

#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38조·제39조·제41조”를 “지방자치법 제44조·제45조·제47조”로 하고, “같은 법시행령 제19조의4”를 “같은 법시행령 제54조 제3항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법 제41조”를 “법 제47조”로, “90일”을 “100일”로 하고,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
제3조 중 “법 제38조·제39조·제41조”를 “법 제44조·제45조·제47조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영 제19조의4”를 “영 제54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법 제36조제1항”을 “법 제41조제1항”으로 하고, “법 제125조”를 “법 제134조”로 하며, “법 제118조”를 “법 제127조”로 한다.

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 의회가 개최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 총일수의 범위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.

#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·제39조·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(이하“영”이라 한다)제19조의4</u>의 규정에 의하여 <u>안산시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의</u>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·임시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연간 회의총일수) 「<u>법 제41조</u>」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<u>90일</u> 이내로 한다. <u>&lt;단서 신설&gt;</u></p> <p>제3조(회기) <u>법 제38조·제39조·제41조</u>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. 1. ~ 2. (생략)</p> <p>제4조(정례회 집회) <u>영 제19조의4</u>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 1. ~ 2. (생략)</p> <p>제5조(심의)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<u>법 제36조 제1항</u>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<u>법 제125조</u>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<u>법 제118조</u>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 ③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----- 「<u>지방자치법</u>」(이하“<u>법</u>”이라 한다) <u>제44조·제45조·제47조</u>---같은 법시행령(이하“<u>영</u>”이라 한다)<u>제54조제3항</u>-----</p> <p>제2조(연간 회의총일수) 「<u>법 제47조</u>」----- -----<u>100일</u>-----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제3조(회기) <u>법 제44조·제45조·제47조</u>의----- ----- ----- 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4조(정례회 집회) <u>영 제54제3항</u>----- ----- ----- 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심의)①-----<u>법 제41조 제1항</u>----- <u>법 제134조</u>----- ----- ②-----<u>법 제127조</u>----- ----- ③(현행과 같음)</p>

#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739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8. 9 . 22 .  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## 수정이유

-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총일수를 우리시의 인구 및 시세규모 등이 비슷한 타시·군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동일하게 수정함.

## 수정주요골자

- 연간 회의총일수를 90일 이내로 수정함.(안 제2조)

#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 중 “100일”을 “90일”로 한다.

# 조 문 대 비 표

원           안	수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2조(연간 회의총일수) 「법 제47조」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.</p> <p>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연간 회의총일수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90일-----.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